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3.)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목 차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5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9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58
8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0
10	거창승강기R&D센터(초고속승강기 활성화 지원)출연안	76
11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지원)출연안	81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87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0. 23.

나. 발 의 자: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이홍희, 변상원, 최광열, 김향란,
표주숙, 강철우, 박희순, 이성복)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정이유

-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

다. 합 의: 기획감사실, 재무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26. ~ 10.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제정(4):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5. 검토의견

가.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민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나.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주요내용

-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구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12조)
-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5. ~ 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 완료(5):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5. 검토의견

가.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은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017. 7. 26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같음
-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

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

①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1. 제안이유

- 2017년 읍·면 순방 시 북부권역 119안전센터 주민건의 지원요구 및 거창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용양권역 119 안전센터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용양면 노현리 112, 113, 114번지
- 사업기간: 2017.7. ~ 12.
- 매입면적: 2,076㎡ (토지소유자: 조가매)
- 매 입 비: 300백만원(군비 300백만원)
- 주요기능: 용양면 119안전센터 건립

- 화재의 초기대응과 응급환자의 적기 구조·구급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필지		2,076	88,370			
취득	토지	웅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5,077	2017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웅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5,948			
		웅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7,345			

다. 추진경과

- 2017.2.2.: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지원 검토 보고
 - 웅양면 소재지 일원 약 990㎡ / 100백만원 정도
- 2017.3.27.: 웅양면 부지 추천
 - 3개부지: 죽림리 304(군유지), 노현리 490-1(도 교육감) 노현리 112 외 2필지(사유지)
- 2017.4.19.: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노현리 490-1, 노현리 112 외)
- 2017.6.15.: 부지 현장 확인(군·소방서·웅양면)
- 2017.6.23.: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웅양면 노현리 112, 113, 114/ 2,076㎡

※ 대상지 선정 사유: 웅양면(주민 등), 거창소방서 현장의견 반영

라. 향후계획

- 2017.11. ~ 12.: 토지 보상 등 부지 매입
- 2018. 1. ~ 12.: 대부계약 및 119안전센터 건립(거창소방서)

마. 기대효과

- 소방사각지역해소 및 소방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가. 위치도



나. 현장사진



4.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안전 불감증과 소방 업무의 증가 등 농촌지역의 소방사각 지역을 해소하고 소방 골든타임 내 재난·재해, 구급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센터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1.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특산물 판매 및 친환경 교육을 위한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9.12.(3년)
- 사업비: 290백만원
- 사업규모: 1,451㎡
- 사업내용: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필지			290,200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88-1	전	897	179,400	2017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8-2	전	378	75,600	2017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7	답	176	35,200	2017		형미생

다. 추진경과

- 공모사업 신청(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거창군→낙동강청): 2016.9.19.
-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2016.12.19.
- 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 사업부지 선정 통보: 2017.9.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승낙 및 사전협의 완료: 2017.9.

○ 감정평가 의뢰(진행 중): 2017.10.

라. 향후계획

○ 2017.11.~12.: 토지보상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8년: 사업착공 및 사업추진

○ 2019년: 사업준공 및 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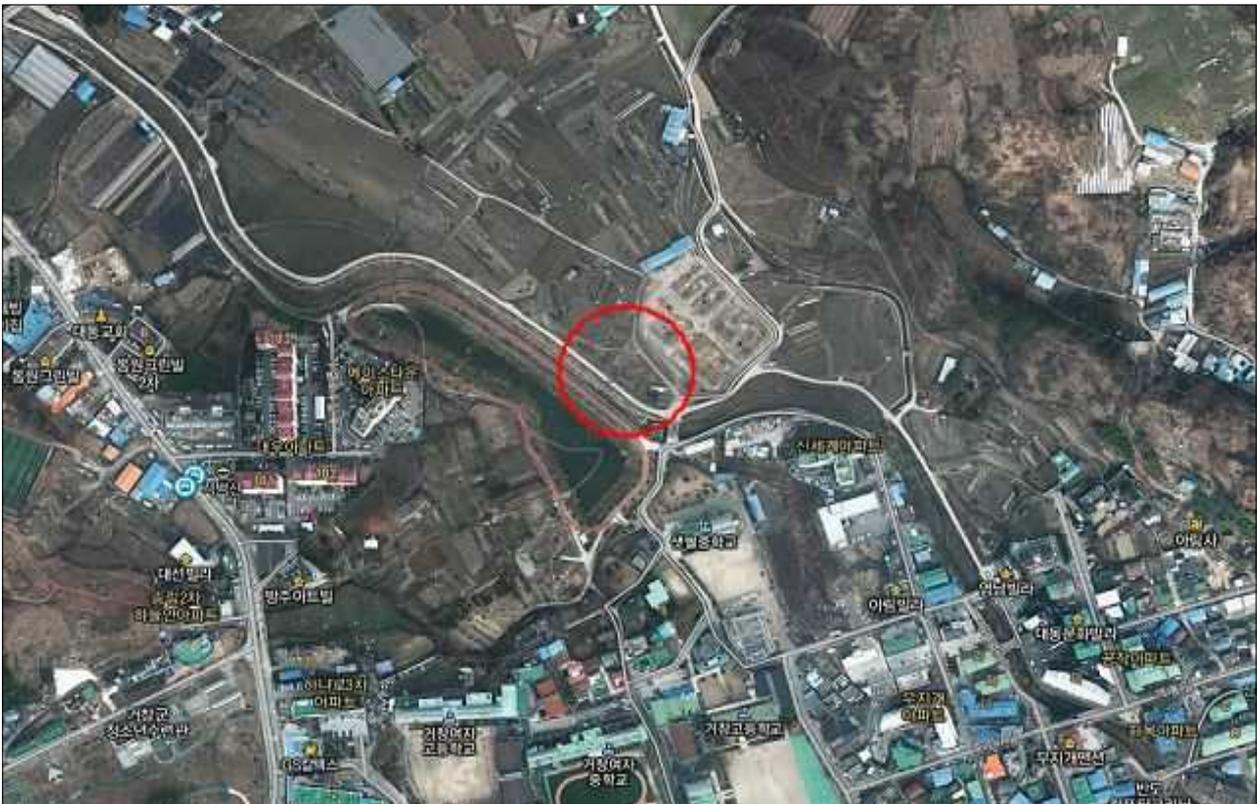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환경체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제고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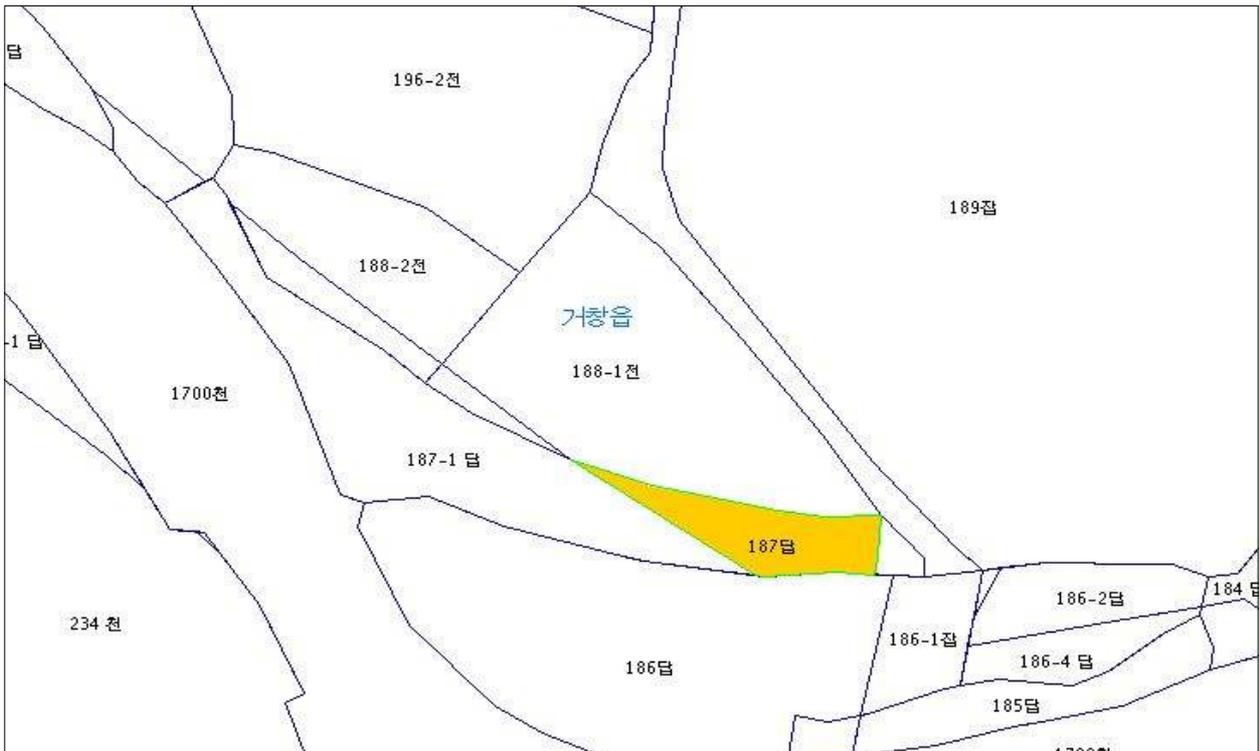
가. 위성사진



나. 현장사진



다. 지적도



4. 관련법규 등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또한 친환경 등
하천환경 인식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는 현실로 교육센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나. 조성사업 부지 위치가 자동차운전 학원 옆이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는 등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추진 과정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공유임야 매각

1. 제안이유

-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공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계장)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77-14, 1477-15
- 처분면적: 3,300m²
- 기준가격: 11,710천원

나. 처분재산 세부내용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3,300	11,710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4	목장용지	2,411	8,607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5	목장용지	889	3,103

다. 추진경과

- 1997.~ : 양돈업 시작.
- 2011.11.: 공유림 사용허가계약 체결(산림과)
- 2012.3.: 지목변경으로 공유재산 변경계약
- ※ 임야⇒ 목장용지 지목 변경 후 산림과에서 농업축산과로 행정재산 이관
- ※ 사용기간: 2019.10.31.까지
- 2017.9.: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조치 지시

- 2017.10.: 공유재산 특정감사 조치에 따른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보고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마. 기대효과

-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농가에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축산업계의 어려움 해소.
-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으로 적법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져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3. 현황사진



4. 관련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현재 목장용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이 건 부지 내에 무허가 축사가 건축되어 있음
- 나.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축산 농가는 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상황으로
- 다. 축산농가의 민원해소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므로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변경)

1. 제안이유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을 위해 2016. 11. 9 제3차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다른 부지를 매입코자 함.

2. 취득재산의 표시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8.12.(2년)
- 사업비: 1,900백만원(국비 500, 도비150, 군비1,250)
- 사업규모: 4,066㎡(농기계보관창고 1동, 운영사무실 1동)
- 사업내용: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 매입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당 초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3,438	50,539			
취득	토지	위천면 장거리 190	답	1,679	24,681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채희
		위천면 장거리 191	답	1,759	25,857			강채희

- 변경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필지		4,066	65,056			
취득	토지	위천면 장거리 269-9	답	4,066	65,056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승희

다. 추진경과

- 2016.11.9.: 2016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2016.12.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2017.2.: 신설에 따른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 2017.3.: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 신청(농축산식품부)
- 2017.9.: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민설명회 개최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입
- 2018.12.: 건축물 신축 및 임대사업소 개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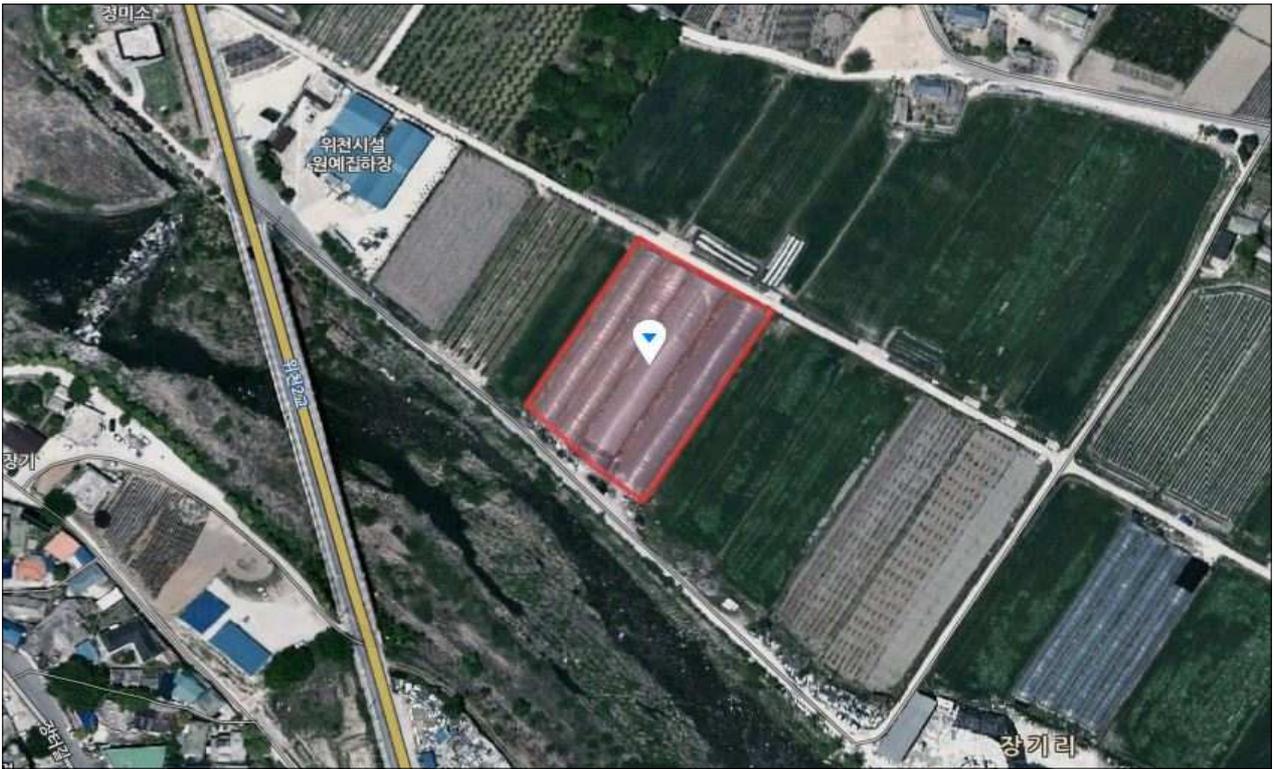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으로 영농경영비 절감
- 임대농기계사업 확대로 농번기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치도



나. 위성사진



다. 현장사진



4.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또한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사료되며

나. 사업 추진 시 주변여건 진입로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대상지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추진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음.

⑤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변경)

1. 제안이유

거창읍 김천리 공유지(237-16)인근 237-9번지를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영업세입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현 보건소 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사업기간: 2017. 8. ~ 2018. 6.
- 사업규모: 500m² (안심센터, 쉼터, 가족카페)
- 사 업 비: 1,377백만원(국·도비726, 군비651)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당 초	1,191,000	600,000	75,000	516,000	
변경 후	1,377,320	645,154	80,644	651,522	
증액금액	186,320	45,154	5,644	135,522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당 초

(단위: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이귀순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 군수

○ 변경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건물	거창읍 송정리 332-3	대지	500	2,754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 군수

다.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 2017.7.31.: 거창군 치매지원 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거창읍 김천리 237-9 /331m²
 - ※ 대상지 선정 사유: 군유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반영
- 2017.8.11.: 2017 제5회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7.9.13.: 제227차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
- 2017.10.17.: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 요청
- 2017.10.17.: 보건소 증축가능 여부 전문가 자문(증축가능)

라. 향후계획

- 2017.11.: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8.1.: 계약 및 공사 발주
- 2018.7.: 치매안심센터 개소

마. 기대효과

-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지원
- 낮시간 보호, 카페운영 등 경제활동 참여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보건소 내 설치로 주민접근성 및 사업연계 등 사업 효율성 증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성사진



나. 현장사진-치매안심센터 건립예정지(현재 공용차량 주차장)



4.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가. 치매안심센터 건립 부지는 2017. 9. 13 제227회 거창군 의
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나.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대상
지를 변경한 경우로

다. 변경된 부지는 현재 보건소 부지 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라. 현재 보건소 부지 내 주차장이 넓지 않는데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 기존 주차장 축소뿐 만 아니라 추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 대 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 사 업 비: 3,7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200	3,700	3,700			3,700	

○ 사업내용

-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4.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붙임 3

6. 검토의견

-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전화번호 : 02-2071-2798			
	시행령 :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공 석			공 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 석		
	이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8,236 (설립이후 2016년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8,723 (자산 총액)
	예산액	7,518	8,406	9,986		부채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198	8,276	9,551		자본	8,62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붙임 2]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연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안)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시세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사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청(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청(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청(세정과장), 의왕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청(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장), 이천시청(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청(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청(세정과장), 오산시청(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청(세무과장), 동두천시청(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파천시청(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청(세정과장), 원주시청(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청(세정과장), 충주시청(세정과장), 제천시청(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청(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청(세무과장), 서산시청(세무과장), 논산시청(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전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청(세무과장), 익산시청(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청(세무과장), 나주시청(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청(세정과장), 김천시청(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국청(세무과장), 영주시청(세무과장), 영천시청(세정과장), 상주시청(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청(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청(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청(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청(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김해시장(남세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

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7. 5. 26.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939 (2017. 5. 26.)	접수 재무과-12807 (2017. 5. 26.)
우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서울특별시 원	한국지방세연구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98	팩스번호 02-2071-2722	/ monsy1@kilf.re.kr / 대국민 공개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60호(2017. 8. 10.)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7. 8.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8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7. 8. 14.

협조자

시행 세정과-10372

(2017. 8. 14.)

접수 재무과-20443

(2017. 8. 1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세정과 / <http://gyeongnam.go.kr>
(사림동)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919

/ u7902041@korea.kr

/ 비공개(5)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20조 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다.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 ◆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 ◆ 문화예술관람권: 2장이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129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평생교육센터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1. ~ 10.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 완료(3):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5. 검토의견

- 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귀촌, 귀농 등 인구 전입이 절실한 현실로 전입세대 및 전입세대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 ※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 추가함(안 제2조)
 - 변호사 ⇒ 변호사 및 법무법인
- 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지원 대상·절차·액수·요건, 반납 기준
- 라.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함.(안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5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8. 16. ~ 9.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완료(6):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5. 검토의견

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신장으로 형사 또는 민사사건이 증가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사건의 다양화로 개인 변호사보다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 5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변호 포함)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정이유

-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나 군 행정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1조~제11조)

- 11개 조례 16건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유과학기술부 ⇒ 교육부
- 내무부 ⇒ 행정안전부

나. 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12조·제13조)

- 3개 조례 6건
-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 건설교통과 ⇒ 경제교통과
-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센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9.7.~9.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입법예고(창원시)

5. 검토의견

- 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조례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바르게 변경하고
- 나.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실·과 사업소 등의 명칭을 바르게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경제적·비능률성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한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조)
 - 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실장
- 다.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 라.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0조)
- 마.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의2, 제88조~96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8. 17.~9.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완료(9): 창원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5.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거창군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1.>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31.] [국토교통부령 제402호, 2017.1.31., 일부개정]

제99조(지명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이하 생략~

□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개정전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민원봉사실장,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요구이유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6.1.1.~2017.12.31.) 만료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나. 위치: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 다.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라. 위탁대상 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정착지원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마. 재계약 방법: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 2017. 9. 28. 심의결과 재계약 적결
- 바. 재계약 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 사. 재계약 기간: 2018. 1. 1 ~ 2019. 12. 31. / 2년
- 아. 소요예산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제1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4.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분야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함
- 현 위탁기관은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돕고 있으며,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2014년 도내 1위, 2016년 13개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84점을 달성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

○ 특수시책사업으로 친정나들이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2018년 부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이 바람직함

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9월: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 2017. 10월: 군의회 주례보고 → 일반의안 상정

○ 2017. 12월: 재계약 체결

○ 2018. 1. 1 ~ 2019. 12. 3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가.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들의 2세대들도 차별없는 교육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문화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 ❖ 2017. 12. 3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이 종료됨
-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절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I 위탁개요

○ 위탁현황

기관명	위탁단체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	비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창기독교청년회 이사장 표정숙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조미금	4명	

○ 위탁기간: 2016. 1. 1. ~ 2017. 12. 31. / 2년

– 최초 운영: 2008. 1. 30. / 거창기독교청년회 위탁

○ 위탁사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복지사업 업무

– 13개 사업, 390백만원 보조금 지원

○ 다문화가족 현황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벡	미국	기타
322	131	70	39	27	22	17	7	3	2	1	3

II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일반의안 상정

○ 2017. 12월: 재계약 체결

○ 위탁단체와 민간위탁 기간

– 위탁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 위탁기간: 2018.1.1. ~ 2019.12.31.

Ⅲ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7.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거창승강기 R&D센터 출연안
[초고속승강기 활성화 지원]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거창승강기 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초고속 승강기를 설치하여 거창승강기 기술력 부각 및 승강기 명품도시 구축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
 -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 사 업 비: 460백만원(군비)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간
2018년		460	460			460	

4. 부서 의견

- 대부분 승강기 정격속도는 120m/min이며, 240m/min일 경우 우수 기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어,
- 거창의 상징물인 거창승강기R&D센터 내 “테스트타워”에 초고속(360m/min) 승강기를 설치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 군민들에게 시승 체험으로 거창승강기 기술력 과시 및 승강기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에게 승강기 인지도와 구매 욕구 확산으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의 산업 활성화 기대 및 거창승강기 명품도시 구축을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46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6. 검토 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창승강기 산업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므로 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설립근거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전화번호 : 080-808-0114		
					홈페이지 : www.ktl.re.kr		
주요연혁	1966년 : 한국정밀기기센터(FIC) 설립 1983년 : 기업기술지원센터(한국기계연구소부설) 1989년 : 품질평가센터(생산기술연구원부설) 1999년 : 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설) 2006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독립법인 출범) 2015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이전			기관형태 (출연)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2.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2명		719명		143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기관장 (당연직)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2017. 10. 26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주요기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88,92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9,973 (자산 총액)
	예산액	135,317	133,090	-		부채	81,04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	100	-		자본	88,92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3,090			135,109		-2,019	

[붙임 2]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2호, 2017.3.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기업지원과) (시행일 : 2017.05.10)

(제정) 2009.10.07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 2011.08.08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367호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승강기R&D센터 출연안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지원]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거창승강기R&D센터 시험·인증 운영체계 활성화를 통해 승강기 허브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14조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12.20)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 사 업 비: 100백만원(군비)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간
2018년	-	100	200			100	100

○ 사업내용

- 승강기 시험·인증 업무 활성화
 - 거창승강기R&D센터 시험실 작업·연구환경 개선
 - 테스트타워 시설 환경안전 개선
 - 승강기 시험인증관련 세미나 개최, 기술자료 배포
 - 기업지원용 시험·인증업무 지그제작, 재료구입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교정
 -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 개발
- 거창승강기밸리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승강기밸리 홍보/마케팅 팸플릿 제작·배포
 - 승강기 테스트타워를 활용한 밸리 홍보

4. 부서 의견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산업술시험원,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승강기제품 시험·인증 및 성능평가, 해외인증, 엔지니어링 등 승강기분야 지원업무 활성화, 거창승강기밸리 홍보 강화 및 거창 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 기반확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승강기R&D센터가 경남 서북부 지역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10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6. 검토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창승강기 산업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거창승강기R&D센터)

설립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전화번호 : 080-808-0114	홈페이지 : www.ktl.re.kr	
주요연혁	1966년 : 한국정밀기기센터(FIC) 설립 1983년 : 기업기술지원센터(한국기계연구소부설) 1989년 : 품질평가센터(생산기술연구원부설) 1999년 : 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설) 2006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독립법인 출범) 2015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이전		기관형태 (출연)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2.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2명		719명		143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기관장 (당연직)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2017.10.26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주요기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88,92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9,973 (자산 총액)
	예산액	135,317	133,090	-		부채	81,04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	100	-		자본	88,92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3,090			135,109		-2,019	

[붙임 2]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2호, 2017.3.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기업지원과) (시행일 : 2017.05.10)

(제정) 2009.10.07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 2011.08.08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367호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 제품 시험·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홍보·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양동인)
- 사 업 비: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4. 부서 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 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 거창군 인구 유지는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이 크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출연기관)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명		17명		
임 원 (‘17.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민주평통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이○○	군립요양병원장		2017. 4.17~2017.12.15		
	이사	송○○	전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6.10.31~2017.12.15		
	이사	최○○	화성건설 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오○○	전 거창중학교 교장		2016.10.31~2018.10.30		
	이사	김○○	경남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도○○	전 거창홍사단 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최○○	김순호세무회계사		2013.12.16~2017.12.15		
	이사	강○○	거창위생 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민○○	거창신문 대표		2016. 8. 5.~2018. 8. 4		
	이사	양○○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6.6.10.~2017.12.15.		
	이사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6.6.10.~2017.12.15.		
	감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7.12.15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6.9.29~2017.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515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00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0,392 (자산 총액)
	예산액	13,228	11,830	11,083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400	1,000	665		자본	10,39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633			1,261		10,37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